

### 제 3 여객터미널 빌딩 이용 규칙

(목적)

제 1 조 본 규칙은 도쿄국제공항터미널주식회사(이하 TIAT)가 터미널 빌딩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동빌딩의 안전, 능률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 2 조 본 규칙은 TIAT 가 관리하는 부지 내 시설(여객터미널, 주차장 및 연락 통로)안의 관청전용구역을 제외한 공공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해 적용한다.

2 TIAT 와의 계약에 따른 임대 부분의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당사자간에 정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준거한다.

(입장 제한 또는 금지)

제 3 조 TIAT 는 혼잡 예방 및 기타 터미널 빌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입장을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

(보안 구역)

제 4 조 TIAT 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보안 구역에는 다음에 열거된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 (1) 도쿄국제공항장 및 관계 관청의 승인을 받은 자
- (2) 항공기에 탑승, 하차하는 여행객 및 승무원
- (3) 직무 중의 경찰관

2 전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출입허가증 또는 완장 등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금지 행위)

제 5 조 터미널 빌딩에서는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금지한다.

- (1) 건물, 시설, 간판 등을 오손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
- (2) 주기장에 물건을 던지는 등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3) 종이 쓰레기, 사용이 끝난 포장용기 및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소정의 장소 외에 버리거나, 또는 수화물 및 기타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 (4) 다음 물건의 반입

가. 폭발물,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건 및 기타 위험물

나. 날붙이, 봉 등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

다. 악취를 풍기는 물건, 구조가 장대한 물건, 기타 건물 또는 시설을 오손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5) 동물의 반입

단,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 중인 맹도견, 청도견, 안내견 및 항공여객의 수화물로서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택시, 전세택시 등의 호객 행위

(7) 연설, 시위 행위 및 기타 유사 행위

(8)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9) 고성방가, 고음, 난폭행위 기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10) 당일 도착 및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기 이용객 및 이를 송영하는 자 이외의 자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야간 체류

(11)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TIAT 직원 및 기타 TIAT 가 관리하는 부지 내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진, 동영상 등 촬영하는 행위

(12)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TIAT 직원 및 그 외 TIAT 가 관리하는 부지 내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Facebook, Twitter 등의 전자매체, 기타 매체에 게재하는 행위

(13) 전 각 호외 터미널 빌딩의 안전, 풍기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피해 또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터미널 빌딩에서는 TIAT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금한다.

(1) 화기 사용

(2) 기부금 모금

(3) 물품 판매, 배포, 광고 선전 활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 행위

(4) 간판, 깃발, 인쇄물, 서면 등의 게시 또는 배포

(5) 영업용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의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일시적 시설 사용

(6) TIAT가 관리하는 터미널 빌딩 부지 내의 차량 주정차.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방치

(이용 정지 등)

제 6 조 TIAT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터미널 빌딩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터미널 빌딩의 이용을 정지 또는 사용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시설 수리, 기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3) 전 2 호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

제 7 조 TIAT는 전 조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빌딩의 이용 정지, 또는 사용 방법 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제 8 조 터미널 빌딩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TIAT의 시설을 오손, 손상시키거나 또는 그 행위에 의해 TIAT에 손해를 입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지 및 퇴거)

제 9 조 TIAT 및 TIAT 에서 경비를 위탁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 또는 퇴거, 혹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1) 제 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터미널 빌딩에게 들어온 자
- (2)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구역에 들어간 자
- (3)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행위를 한 자

(법령의 준수)

제 10 조 TIAT 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본 규칙 이외에 항공법, 공항 관리규칙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실시 필요 사항)

제 11 조 본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TIAT 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규칙은 2010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칙은 2018 년 5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칙은 2020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